

# 2020 년도 보육시설 등 이용안내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의 이용개시 신청 안내  
신청하기 전에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용대기가 된 경우,  
 계속 이용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다시 2021년도에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수속 등에 관한 문의처】

- 센다이시 아오바구청 가정건강과 보육계 (미야기 종합지소의 관할을 제외)  
 〒980-8701 아오바구 가미스기 1 초메 5-1 Tel (대)225-7211(내선 6763)
  - 미야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아동가정계 (미야기 종합지소 관내 보육시설 관련)  
 〒989-3125 아오바구 시모아야시 간논도 5 번지 Tel (대)392-2111(내선 5432)
  - 센다이시 미야기노구청 가정건강과 어린이가정계  
 〒983-8601 미야기노구 고린 2 초메 12-35 Tel(대)291-2111(내선 6763)
  - 센다이시 와카바야시구청 가정건강과 어린이가정계  
 〒984-8601 와카바야시구 호슈인 마에초 3-1 Tel(대)282-1111(내선 6763)
  - 센다이시 다이하쿠구청 가정건강과 어린이가정계  
 〒982-8601 다이하쿠구 나가마치미나미 3 초메 1-15 Tel(대)247-1111(내선 6763)
  - 센다이시 이즈미구청 가정건강과 어린이가정계  
 〒981-3189 이즈미구 이즈미추오 2 초메 1-1 Tel(대)372-3111(내선 6763)
- ※ 보육시설 등의 소관내용은 "2020년도 센다이시 보육이용 대상시설 등 일람"에서 확인해주세요.

## 1. 신청 방법

### (1) 신청 장소와 접수 기간

제 1 희망의 보육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가정건강과(아오바구 미야기종합지소 관내의 시설은 미야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이하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서 신청기간에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2020년 4월 1일 이용 개시의 신청 기간】

2019년 11월 6일(수)부터 2019년 12월 5일(목) 17시까지

※ 마감 직전에는 사람들로 많이 붐비므로 여유있게 신청해 주세요.

### 【연도 도중의 이용 신청 마감일】

• 매월 1 일자 이용 개시의 경우(4월 1일을 제외함) . . . 전월 5 일까지

• 매월 16 일자 이용 개시의 경우 . . . . . 전월 20 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전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가 준비 되지 않을 경우 접수할 수 없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주세요.

※희망 시설의 추가 및 변경은 신청 구의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 신청 마감일까지 연락해 주세요.(추가와 변경은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 교육·보육급부인정 및 이용조정하기 위해 가정상황 등을 청취하므로, 반드시 보호자 본인이 창구에 오시기 바랍니다.

## (2) 신청 요건

아래 ①및②의 요건을 채우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아동과 보호자가 보육시설 이용을 시작한 날에 센다이시에 거주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센다이시에 주민표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 ②아동 보호자가 보육 필요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3 쪽 참조)

※ 입학 가능 연령과 개월 수는 각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2020 년도 센다이시 보육이용 대상시설 등 일람」에서 신청하기 전에 잘 확인해 주세요.

## (3) 신청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주소, 취로 상황, 가정 상황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신청한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 연락해 주세요. 이용 조정 후, 신청 내용과 실제의 가정 상황이나 보육이 필요한 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지면 내정을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청을 취소하거나 이용 희망 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도 반드시 연락해 주세요.**

※ 보육시설 등의 이용 개시 이후도 주소, 취로 상황, 가정 상황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즉시 「교육·보육급부 인정 변경 신청서 겸 가정 상황 등 변경 신고」와 필요서류를 보육시설에 또는 구청 가정건강과에 제출해주세요.

## 2. 신청 대상 보육시설

이 이용안내서에 있어서의 보육시설은 **보육소 및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부분), 가정적 보육 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부분)**입니다. 이 이용안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또, **이용 신청하기 전에 희망 시설을 견학하고, 통원 가능 여부 및 시설의 생활과 보육 방침, 그리고 급식의 알레르기 대응에 대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청이 지정한 시설 이용을 거절할 경우에는, 대상 년도 내 우선 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정 출산 등으로 타 시초촌(市町村)에서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역이용 대상이 될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 시설 정보]

- 보육 시설의 자세한 내용은 「2020 년도 센다이시 보육 이용 대상 시설 일람」을 참조해 주세요.
- 각 구청 가정건강과 등의 창구에서 센다이 시내의 보육 시설의 자세한 정보 (시설 상황 · 보육 시간표 · 보육원입학 가능한 개월수 · 위치도 등)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센다이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육아」>「보육소·유치원 등」에서도 보육시설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견학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보육시설에 상담해주세요. 또한, 보육엄마에 대해서는 소재지 구청 가정 건강과 등에 문의해주세요.

### [기타 보육시설 정보 (참고)]

보육시설 외에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시설 등도 있습니다.

또한 시내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일시적인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가 받은 보육시과 같은 정도의 보육 시간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센다이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육아」>「보육소·유치원 등」를 참조해주세요.

**Q. 시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가능합니까?**

**A. 이용 개시일까지 시내에 전입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전입 후 새로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의 확인 자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 등은 전입 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유효합니다.

**Q. 거주하고있는 구와 다른 구의 보육시설 신청도 가능합니까?**

**A. 시내에 있는 보육시설이라면 가능합니다.**

1 장의 신청서에 거주지 이외 구의 보육 시설을 포함한 여러 희망 보육시설을 기입해도 괜찮습니다. 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제 1 희망 보육시설이 있는 구청 가정건강과 등이므로 주의해주세요.



### 3. 교육·보육급부인정(2호인정 또는 3호인정)

#### (1) 교육·보육급부인정에 대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보육급부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보육급부인정은 아동 연령과 보육 필요성에 따라 3 종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하기 위해서는 2호인정 또는 3호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보육급부인정 구분	실시연령	보육 필요성	주된 이용 가능 시설 등
1호인정 <교육 표준 시간> ※직접 각 시설에 신청해 주세요.	3-5세	관계 없음	• 신제도유치원 (※지급인정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 인정 어린이집 (유치원 부분)
2호인정 <보육표준시간 / 보육단시간>	3-5세	있음	• 보육소 •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부분)
3호인정 <보육표준시간 / 보육단시간> ※만 3세가 되면 샌다이시가 2호인정에 변경하므로 보호자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0-2세	있음	• 보육소 •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부분) • 가정내 보육사업(보육엄마)※ • 소규모 보육사업 ※ •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 부분)※ ※만3세가 된 해의 연도말일까지 이용가능

#### (2) 보육 필요성 사유에 대해

2호인정 혹은 3호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육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보육필요성”이 인정돼, 보육시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월 64시간 이상 취로하는 경우. (자영업, 야간근무, 내직 등을 포함함)  
 ※ 육아휴업 중에는 보육시설 이용개시일의 2개월 후까지 복직하는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복직 예정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보수 일은 취로가 아니라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원봉사, 자가 소비용 농업, 반상회 임원 등)
2.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얼마되지 않아서 형제의 보육이 어려운 경우.  
 ※ 인정기간은 출산 예정일의 8주일전 날부터 출산일부터 8주일 후의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단, 다태아의 경우, 출산 예정일의 14주전 날부터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하십시오.
3. 질병, 부상, 또는 정신 혹은 신체에 장애를 입어, 자택에서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
4. 가정 내의 친족을 항상 간호, 간호하는 경우.(1개월에 64시간 이상)
5. 대지진, 풍수해, 화재 등의 피해를 입어서 복구에 임하고 있는 경우.
6. 구직 활동 중인 경우.  
 ※인정기간은 인정 개시일로부터 90일 또는 3개월 후의 기간이 짧은 쪽의 월말까지입니다. 단,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로, 인정 기간이 변경됩니다.
7. 월 64시간 이상 취학하는 경우. (학생, 직업 훈련 등으로 통학하는 경우)
8. 그 외, 상기 사항에 유사한 이유로 자녀를 보육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보육급부인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상기 사유에 해당돼, 2호인정이나 3호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Q. 일하고 있지 않으면 신청 할 수 없습니까?

##### A. 구직 활동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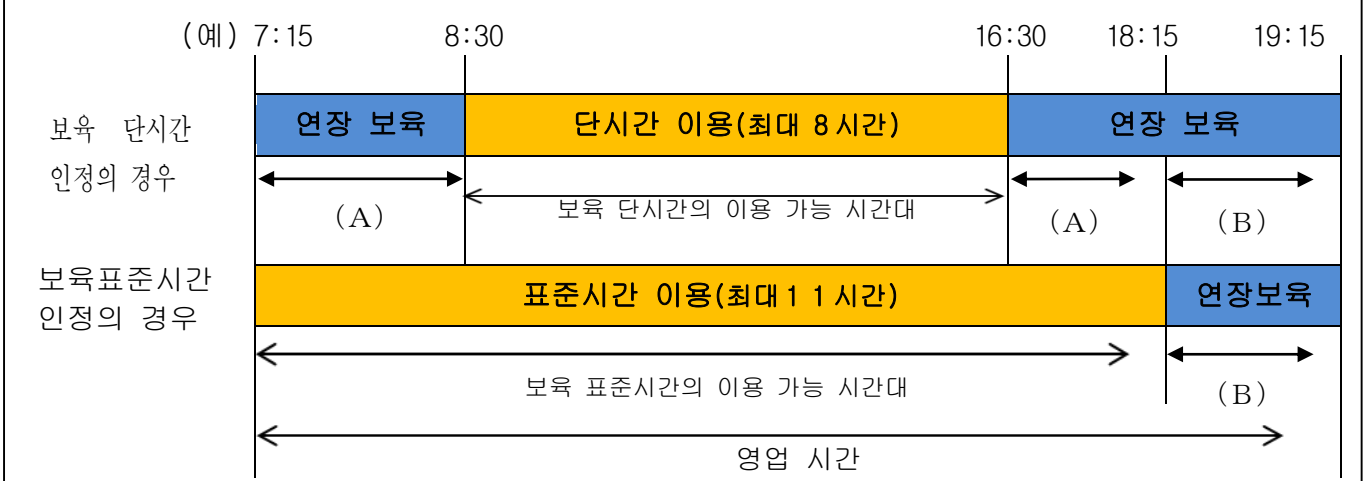
그러나 출산·구직·취학을 이유로 보육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제한됩니다. 이용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보육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 이용이 필요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근무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없으면 퇴소해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 (3) 보육 필요량(필요한 보육시간)

2호인정 혹은 3호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 필요량(필요한 보육시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육 필요량에는 「**보육 표준시간 인정**」과 「**보육 단시간 인정**」 2종류가 있습니다만, 각 가정에서의 필요한 보육시간과 통근시간 등을 고려해서 센다이시가 결정합니다.

각 시설에서 ‘보육 표준시간의 시간대(최대 11시간)’와 ‘보육 단시간의 시간대(최대 8시간)’가 설정돼 있으므로 이 시간대 내에서 취로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각 보육시설의 보육이용 시간대는 「2020년도 센다이시 보육이용 대상시설 등 일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해설】 ※기재 시간은 공립 보육소의 경우입니다. 설정 시간은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각 보육시설에서 설정하는 보육표준시간 또는 보육단시간 시간대 이외 시간은 연장 보육이 되어, 연장 보육료가 별도 걸립니다. 하지만, 하루에 8시간 또는 11시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육단시간인정 분이 보육표준시간의 시간대까지 이용하는 연장 보육료(A)와 보육 표준시간인정 분이 보육표준시간의 시간대를 넘어 이용하는 보육료(B)는 금액이 다릅니다. 연장보육료에 대해서는 각 보육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유아교육 · 보육의 무상화,이용자 부담액 경감제도 (별지 교육 · 보육급부인정에 관한 새로운 제도에 의해 이용자 부담액 (월액) 뒷면 참조)은 일반적으로 보육료가 감액되는 경우에도, 연장 보육료는 경감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육 표준시간 인정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까?**

**A. 보호자 모두가 월 120 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보육 필요성의 사유가 임신 · 출산, 재해 복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월 120 시간 미만이라도 출 · 퇴근으로 인한 이동시간을 포함해 보육 표준시간에 준하는 경우에는, 보육 표준 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취학 등 취업 이외의 이유로 보육 표준시간에 준해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육 표준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Q. 보육 단시간 (표준) 인정으로 이용 (신청)했는데, 보육 표준 (단) 시간 인정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까?**

**A. 이용중인 보육 시설 또는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보육시설 또는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 비치되어 있는 「교육 · 보육급부인정변경신청서 겸 가정상황 등 변경신청서」로 신청해주세요. 변경은 전월 20 일 (토.일 공휴일의 경우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5 월 1 일부터 변경하는 경우, 4 월 20 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Q. 한번 신청하면, 보육시설 이용 개시까지 신청이 유효합니까?**

**A. 대상 연도 내 (2021년 3월 16일자 보육원 입학 이용조정까지) 는 유효합니다.**

대상연도 내는 이용개시 희망일의 이용조정으로 “대기”가 돼도 계속 이용조정 (매월 1 일자, 16 일자) 대상이 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4 월 1 일을 지나면 별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4. 이용자 부담액(보육료)

보육시설 이용요금에는 이용자부담액(보육료)과 보육시설마다 발생하는 비용의 2 가지가 있습니다. 보육시설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각 보육시설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또한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에 대해서는 별지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 (1) 이용자부담액(보육료) 결정 방법

보육료는 별지의 교육·보육급부인정에 있어서의 이용자부담액(월액)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아동 부모의 시초손(市町村)민세 소득할액 합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이 이용 안내에 있어서 “부모”라고 기재된 곳은,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는 “보호자”로 변경해 취급합니다.
- ※부모가 비과세이고, 동거하는 조부모 등이 아동을 세법상 부양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거 조부모의 시초민세 소득할액을 합산합니다. 2세대 주택 등으로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에는 별거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서 상담해 보세요.
- ※2020년 4-8월분의 보육료는 2019년도(2018년 1-12월 수입분)의 시초손(市町村)민세로, 2020년 9월-2021년 3월분의 보육료는 2020년도(2019년 1-12월 수입분)의 시정촌민세로 결정됩니다. 다만, 보육료 결정의 근거가 되는 시초손민세액은 배당공제·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외국세액공제·배당할액 공제·주식 등 양도소득할액 공제 등의 적용을 받기 전의 금액입니다.
- ※ 2018년도 시초손(市町村)민세부터 정령지정도시(광역시) 소득할 세율이 6%에서 8%로 변경되었지만, 보육료의 산정은 여전히 6% 세율을 사용합니다.
- ※세의 미신고나 필요 서류의 미제출 등에 의해 시초손(市町村)민세 과세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육료는 최고계층의 금액이 됩니다.
-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업한 경우(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함), 세법상의 편찬공제를 받지 않는 미혼 편찬세대인 경우, 그 외 특별한 이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육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 부담액(보육료)의 납부 방법

#### 【보육소】

매월의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보육소 결정 후, 계좌이체 등록용지를 우송합니다). 보육료 납부기한(계좌이체일)은 매월 말일(토일축일은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일)입니다.

#### 【기타 인정어린이원, 가정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및 사업장 내 보육사업 등】

보육료는 각 시설에 직접 지불합니다.

- ※보육료는 보육사 등의 인건비, 급식비, 시설 관리비 등에 충당됩니다. 서비스를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보육료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입해주세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월급·예저금·부동산 등의 재산을 조사해, 압류 등 처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Q. 3호인정으로부터 2호인정에 바뀌면 보육료도 변경됩니까?**

**A.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 3세(3살 생일의 전날)가 되면 자동적으로 2호인정이 됩니다만, 보육료는 2020년 4월의 클래스 연령(2020년 3월 31일 시점의 만연령)으로 결정되므로 인정 변환에 따른 보육료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인정 어린이집의 1호인정으로부터 2호인정, 2호인정으로부터 1호인정과 같이 교육이용과 보육이용의 변경이나 보육필요량(보육표준시간/보육단시간)의 변경은 보육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9월에 보육료 산정에 있어서 시초손민세 연도 전환을 실시하므로, 보육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보육시설마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A. 식재료비(3세 이상아만), 이불 대여 요금, 제복대, 기저귀 처리대 등입니다.**

이 비용은 보육시설마다 설정합니다. 금액은 희망 보육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 5. 이용 시설등의 조정(이용 조정)에 있어서의 우선 기준

각 보육시설에서 이용 가능 인원수를 넘는 신청이 있었으면, 보육 필요성 정도와 가정상황을 아래 기준으로 수치화해서, 수치가 높은 아동부터 우선적으로 이용시설을 결정합니다.

### (1) 보육이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지수

부모의 보육 필요성을 그 빈도나 시간 등에 따라 지수화한 것입니다.

기준지수는 학부모 각각에 대해 10 점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보호자의 상황				기준 지수	
피고용자  ※월 64시간 이상 취로하는 것이 요건	주 5일 이상 취로 (불규칙 근무는 월 20일 이상)	1일당 취로시간	7시간 이상	10	
			6시간 이상	9	
			5시간 이상	8	
			4시간 이상	7	
			4시간 미만	6	
	주 4일 취로 (불규칙 근무는 월 16일 이상)	1일당 취로시간	7시간 이상	8	
			6시간 이상	7	
			5시간 이상	6	
			4시간 이상	5	
	주 3일 이하 취로 (불규칙 근무는 월 15일 이하)	1일당 취로시간	7시간 이상	6	
			6시간 이상	5	
	취로시간이 월 64시간 이상이지만, 1일당 시간이 상기 이하				4
자영업  ※월 64시간 이상 취로하는 것이 요건	사업주	1일당 취로시간	7시간 이상	9	
			6시간 이상	8	
			5시간 이상	7	
			4시간 이상	6	
			4시간 미만	5	
	주 4일 취로 (불규칙 근무는 월 16일 이상)	1일당 취로시간	7시간 이상	7	
			6시간 이상	6	
			5시간 이상	5	
	주 3일 이하 취로 (불규칙 근무는 월 15일 이하)	1일당 취로시간	7시간 이상	5	
			취로시간이 월 64시간 이상이지만, 1일당 시간이 상기 이하		4
	전종자 (주1)	주 5일 이상 취로 (불규칙 근무는 월 20일 이상)	1일당 취로시간	7시간 이상	8
				6시간 이상	7
5시간 이상				6	
4시간 이상				5	
주 4일 취로 (불규칙 근무는 월 16일 이상)		1일당 취로시간	7시간 이상	6	
	6시간 이상		5		
취로시간이 월 64시간 이상이지만, 취로 일수 또는 1일당 취로 시간이 상기 이하				4	
가점 (주2)	상시 위험물(대형기계·극약·화기·칼 등)을 취급하는 등, 취로 형태상, 취로 시간 중에 보육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소와 주택이 같은 부지내 혹은 인접지에 없는 경우 (외근 포함함)			1	
내직 (평균 월급이 5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자영업 전종자의 항목을 적용함) ※월 64시간 이상 종사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4	
출산(출산 예정일 8주 전 (다태임신의 경우 14주전)에 해당하는 날부터 출산일 (출산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8주간을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8	

보호자의 상황				기준 지수
질병 등	입원	1개월 이상		10
		2주일을 넘어 1개월 미만		8
	통원	주 4일 이상		6
	자택요양	상시 누워 있는 상태, 감염증 등		10
		상기 이외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서 시중이 필요함		8
		일반 요양(운동, 외출 등이 제한돼 있지만, 신변 정리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6
	장애편	개호 필요함(대체로 1, 2급 또는 A 판정 정도)		10
		보육에 지장이 있다(대체로 3급 또는 B 판정 정도)		7
		상기 이외로 필요하다고 생각됨(4급 이하)		4
자택 간호·개호, 통원, 시설통소, 입원환자 시중듣기 ※월 64시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것이 요건.		주 5일 이상	1일당 소요시간이 7시간이상	10
			1일당 소요시간이 4시간이상	7
		주 4일 이하	1일당 소요시간이 7시간이상	8
			1일당 소요시간이 4시간이상	5
		월 64시간 이상 간호 혹은 개호하고 있지만, 1일당 종사시간이 상기 이하		4
재해 등 (화재 등으로 인한 가옥 피해 등, 재해 복구하기 위해 보육할 수 없는 경우)				10
구직 중				3
학교, 직업 훈련 학교 등 통학 ※월 64시간이상 취학하는 것이 요건	주 5일 이상 취학 (불규칙 취학은월 20일 이상)	1일당 취학시간	7시간 이상	9
			6시간 이상	8
			5시간 이상	7
			4시간 이상	6
			4시간미만	5
	주 4일 취학 (불규칙 취학은월 16일 이상)	1일당 취학시간	7시간이상	7
			6시간이상	6
			5시간이상	5
주 3일 이하 취학 (불규칙 취학은월 15일 이하)	1일당 취학시간	7시간이상	5	
		취학시간이 월 64시간 이상이지만, 1일당 시간이 상기 이하		4
부모 부재(사망, 이혼, 단신부임, 행방불명, 구금 등)				10
그 외(상기 각 항목에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10

주 1 : 부모가 같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명을 전종자로 간주합니다.

주 2 : 자영업자의 취로 형태 등에 따라 점수를 추가합니다. 다만, 추가한 점수는 피고용자의 취로 날짜 및 취로 시간에 대한 기준 지수를 한도로 합니다.

※ 취로 시간 등이 불규칙한 경우는 그 평균을 기본으로 합니다.

**Q. 시설을 견학하지 않으면 이용조정 때 불리합니까?**

**A. 이용조정 우선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견학 유무는 입학 우선도에 영향이 없으나, 통원이 가능할지, 보육시설에서의 생활, 보육 방침, 급식의 알레르기 대응(알레르기 내용에 따라서는 입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 입학신청하기 전에 보육시설의 특색을 알기 위해 사전 견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견학 방법은 11 쪽 참조】 .

**Q. 희망시설이 많거나, 이른 시기에 신청하거나, 전년도의 신청 유무는 이용조정 우선도에 영향이 있습니까?**

**A. 우선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우선도는 6-8 쪽 「이용시설 등의 조정(이용조정)에 있어서의 우선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2) 아동의 가정상황 등에 관한 조정지수

아동의 가정 경제상황이나 보육지원상황 등에 따라 기준지수에 가산·감산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아 동 의 가 정 상 황 등		조정지수
저소득 세대	(1) 생활보호 수급 세대, 시정촌(市町村)세 비과세 세대	2
	(2) 경제적으로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세대 (주 3)	4
(3) 아동과 동거하는 65세 미만의 조부모가 보육에 협력할 수 있는 경우		- 1
(4) 편친 가정 (모자 가정, 부자 가정, 또는 그와 비슷한 경우)		3
(5) 이용 희망일 시점에 형제자매가 센터 시내 보육시설 (주 4) 또는 사업소 내 보육사업 직원 입학혜택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동시에 이용신청한 경우		3
(6) 육아휴업 취득을 위해 퇴소한 아동의 재신청		4
(7) 주된 생계 유지자인 보호자(주 5)가 도산, 정리해고,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날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2
(8) 새로 신청하는 아동 보호자가 이용개시일 시점에 센터시내 보육시설 등에서 보육사(설비, 운영기준상 보육사로 간주될 수 있는 보건사, 간호사, 준간호사를 포함함)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세대(보육사증 제출이 필요합니다)(주 6)		3
(9) 3세 미만아 전용 보육소,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또는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범위)의 졸업생이 3세가 된 연도의 다음 4월 1일부터 계속해 보육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주 7)		10
(10) 학대 우려 등, 특별한 사정으로 가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20

주 3 : (1) 과 (7)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 4 : 센터시내의 보육시설 등은 「2020년도 센터시내보육이용 대상시설 등 일람」에 기재된 보육소,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부분),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및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범위)을 말합니다(모든 항목에 해당함).유치원, 인정 어린이집, 임시 보육, 인가와 보육시설(기업체 주도형 보육사업도 포함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5 : 편친세대의 보호자 또는 부모 중 한쪽이 피부양자(공제대상 배우자 등)가 되는 세대의 다른 한쪽.

주 6 : 보육원의 이동 신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조정 지수는 3점 상한입니다.

주 7 : 「2020년도 센터시내 보육이용 대상시설 등 일람」에 기재되어 있는 3세 미만아 전용 보육시설 등에 한합니다.

※ (1) 과 (2) 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5) 와 (6) 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시초손(市町村)민세 과세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저소득 세대의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 (3) 지수 동점의 경우, 이용 조정 순위

기준지수와 조정지수의 합계가 동점이 되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	기준지수의 합계가 높은 경우
2	조정지수에 있어서의 「저소득 세대」에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가산이 4점의 세대는 한층 더 우선)
3	부모 또는 그 한쪽이 단신부임 등으로 집에 없는 세대(조정지수에 있어서 「편친가정」 가산 세대를 제외함)
4	신청 마감일 시점에 신청아동을 “센터시내의 보육시설 등” 이외(주 8)에 유료로 맡기고 있는 경우(재원·통소증명서 또는 이용계약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신청 마감일을 포함한 1개월 이상의 이용기간이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5	동일 연도 내의 이용조정예에 있어서, 이용소개를 받은 시설을 사퇴했던 적이 없는 경우(가정상황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함)
6	세대의 합계 소득 금액이 낮은 경우(주 9)

주 8 : 「센터시내 보육시설 등」 이외란, 유치원, 인정어린이원(유치원 부분), 사업소 내 보육사업(직원용), 임시보육 (「계속적 이용보육」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용료가 무료가 되는 생활보호 세대 및 시초손민세 비과세 세대도 대상이 됩니다), 인가와 보육시설(기업체 주도형 보육사업도 포함함), 센터시외 보육시설 등을 가리킵니다. 또, 아동을 친족이나 직장에 맡기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 9 : 세대의 합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 항목에 있어서의 조정순위는 하위가 됩니다.



또, 아래 항목 해당 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구분해 이용조정을 합니다.

- 장애아동 보육 대상 아동
- 새로 인가보육시설로 이행하는 인가와 보육시설 재원아, 인정 어린이집에 이행하는 유치원 재원아가 계속해 동일 시설(인가어린이원은 보육소부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인정 어린이집에 있어서 1호부터 2호로의 변경
- 3 세 미만아 전용 보육소,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또는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범위)의 졸업생이 재휴시설에서 설정하는 우선적 이용혜택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4 월 1 일자 이용 조정 만)

## 6. 보육시설에서의 생활

###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대해

- 보육시설은 보호자의 취로(통근과 잔업 시간을 포함함)나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에 자녀를 맡기는 시설입니다.
- 각 가정의 송영 시간은 보육시설의 이용 개시에 앞서, 근무 시간이나 통근 시간을 고려하면서 결정됩니다.

### ◎통상 보육에 익숙해질 때까지

보육소는 집단생활의 장소입니다. 집단생활에 들어가는 아동에게는 생활 환경의 변화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입소 첫날부터 종일 보육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아동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보육시간을 연장해, 그 후에 종일 보육에 들어갑니다. (아동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종일 보육까지의 기간은 아동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클래스 편성

클래스 편성은 각 시설에서 결정합니다. 반드시 연령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 클래스도 있습니다.

## 7. 보육시설 퇴소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 개시 후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퇴소해야 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퇴소해야 하는 경우의 예)

### ○센다이 시외에 거주하는 경우

센다이 시내에 거주하는 것은 보육시설 이용 요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센다이시외에 이사하면, 센다이의 보육시설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보육을 필요로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취업을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퇴직했다(월 64 시간 이상 취업하지 않는다)」, 「질병을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완치했다」 등, 보육이 필요한 사유가 없어졌으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육이 필요한 사유가 변경되면 「교육·보육급부인정 변경 신청서 겸 가정상황 등 변경신고」와 함께 변경 내용 확인 서류를 신속히 이용 중의 보육시설 등 혹은 소재하는 구의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 제출해 주세요(보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3 쪽의 「(2) 보육 필요성 사유에 대해」를 확인해 주세요).

### ○교육·보육급부인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직활동, 출산, 취학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인정기간이 제한됩니다.

계속해서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육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근무 증명서 등)를 제출해 주세요.

### ○2개월을 넘어 장기 결석한 경우

보육소 이용 중에 2개월을 넘어 장기 결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소해야 합니다. 또한 인정 어린이집, 가정 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 사업 및 사업장 내 보육사업을 이용 중에 2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는 경우도 퇴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결석 기간 중에도 보육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 ~ 자주 하는 질문 ~

### ◆◆◆ 희망시설에 대해 ◆◆◆

**Q. 희망시설은 몇 개까지 기입할 수 있습니까?**

**A. 얼마든지 기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안내를 사퇴한 경우에는 대상 연도 내의 이용조정에 있어서 이용 우선도가 낮아지므로 확실히 이용 가능한 시설만 기입해 주세요.

**Q. 보육소,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부분),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범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보육소,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부분)은 초등학교 취학전까지(3 세 미만아 전용 보육소를 제외함),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범위)은 3 세에 도달한 해의 연도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보육시설에 특색이 있고, 보육내용도 다릅니다. 보육료는 일률적입니다만,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가요금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육시설을 견학하거나 직접 문의해 주세요.

### ◆◆◆ 이용조정에 대해 ◆◆◆

**Q. 아동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용조정상 연령도 바뀔니까?**

**A. 2020년도 이용조정은 2020년 3월 31일 현재의 만연령으로 결정됩니다.**

결원이나 대기 아동 수를 확인할 때 주의해 주세요. 또, 보육료도 2020년 3월 31일 현재의 만 나이로 결정합니다. 또한 2019년 4월 1일 출생 아동의 2020년도 이용 조정은 1세 유아반,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생 아동은 0세 유아반에서 합니다.

**Q.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면, 이용조정이 불리하게 됩니까?**

**A. 우선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거하는 65세 미만(이용개시 희망일 시점)의 조부모가 보육에 협력할 수 있는 경우(보육이 필요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구직 활동 상황 신고서는 제외)를 제출 못하는 경우)는 조정지수가 “-1”이 됩니다. 또, 세대 합계 소득을 계산할 때는 가족 연령을 불문하고 합산이 됩니다(1월 1일자 센다이시 이외에 주민등록이 있었을 경우에는 시현민세(비)과세 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의 보육료 산정 방법은 5쪽을 확인해 주세요】

### ◆◆◆ 제출 서류에 대해 ◆◆◆

**Q. 단신부임 중 보호자의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까?**

**A. 별거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이용 우선도에 영향이 있으므로 근무증명서와 가정상황 등 신고서에 단신부임중인 것을 명기해 주세요. 또, 1월 1일에 센다이시 이외에 주민등록이 있었으면 시현민세(비)과세 증명서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Q. 이혼을 할 예정인데, 남편(아내)의 근무 증명서 등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까?**

**A.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조정 중에 별거가 완료되면, 이혼조정 중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재판소에서 입수, 제출하면 보육료 산정의 일부 및 이용 조정에 있어서 편친세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아내)의 근무 증명서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 문의해 주세요.

**Q. 신청 후에 동거인이나 직업에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신속하게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 연락해서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동거인이나 취업 상황 등의 변경은 이용 우선도와 보육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연락 없이 후일에 밝혀지면 내정이 취소되거나 보육료가 소급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



**Q. 취직 내정을 얻었는데, 무엇인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A. 근무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보육시설 이용개시 시점에 월 64 시간 이상 취업하는 것을 근무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취업과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용조정에서 취업과 같은 기준지수를 받습니다).

**Q.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외에 거주하는 등, 찾아 오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 1 희망의 보육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가정건강과에 상담해 주세요.

◆◆◆형제자매의 신청에 대해◆◆◆

**Q. 형제자매 보육을 같이 신청했는데, 큰아이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우는 작은아이의 보육시설이 결정될 때까지 취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됩니까?**

**A. 큰아이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작은아이의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업 중이면 이용개시 날의 2 개월 후까지 복직, 구직활동 중이면 3 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합니다.**

보육 필요성의 사유에 따라, 인정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보육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업을 취득하면, 큰아이는 보육시설을 퇴소해야 됩니까?**

**A. 신청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는 「보육시설 등 이용계속 신청서(육아휴업)」와 「근무증명서(육아휴업 기간이 명기된 것)」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심사의 결과, 계속이용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작은아이의 1 세 생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작은아이가 1 살 생일 시점에 보육시설 이용 대기가 된 경우, 신청에 의해 최대 6 개월의 연장(1 살 6 개월 생일 시점에서도 이용대기의 경우, 다시 최대 6 개월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 큰아이의 계속 이용이 허가된 경우에도 계속이용기간 중에 작은아이가 보육시설에 내정되었을 경우, 기간 만료일 전에 복직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작은아이 보육시설 이용개시 2 달 후까지 복직을 해야 합니다).

◆◆◆기타◆◆◆

**Q. 견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A. 보육시설마다 견학 가능일(시간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 내용과 행사 등에 의해 견학하기 어려운 날(시간대)이 있습니다. 가정적 보육 사업(보육엄마) 이외의 시설 견학은 직접 신청해 주세요.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의 견학은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을 소관하는 구의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서 가정적 보육 사업(보육엄마)의 연락처를 확인해, 견학 가능일(시간대)를 물어 보세요.

일정에 따라서는 다른 견학자와 함께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보육시설에서의 인터뷰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A. 자녀분의 발달, 건강상태, 가정에서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또, 자녀분 상태(발달, 알레르기 등)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이 자녀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서 각기관에 상담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유치원, 인가외 보육시설, 임시 보육을 이용하고 싶습디만,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A. 각 시설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사전 신청이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져 문의해 주세요.

## 《 주의 사항 확인 》

교육·보육급부인정 신청서 겸 보육시설 이용 신청서는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동의한 후, 제출해야 하므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후와 보육시설 이용 시작 후에 관련 사항도 있으니 보육시설 이용 안내를 잘 보관 하시고, 필요한 경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센다이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교육·보육급부 인정 신청서 겸 보육 시설 등 이용 신청서」는 보육시설 이용 안내 및 기입 예를 잘 읽고 보호자가 빠짐없이 기입하여 제출해주세요. 또한 형제 자매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아동 1 인당 1 장씩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첨부 서류는 1 세트로도 괜찮습니다).
- 2 필요한 서류는 정해진 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출하지 않거나, 마감이 지난 후 제출 서류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3 "희망 보육시설" 란에는 희망 순으로 보육시설의 명칭을 기입해주세요. 또한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견학 등을 통해 통원 가능 여부, 시설에서의 생활 · 보육방침 및 급식(알레르기 관련 대응)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희망자가 다수인 때는 희망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 5 보육 인정사유 현황 확인을 위해 이용 시작 후에도 1 년에 2 회 정도, 보육을 필요로 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 6 재직증명서 내용에 대해 근무처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양해 바랍니다. 또한 제출 전에 기입의 누락이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 7 육아휴직 상태에서 복직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일로부터 2 개월 후까지 복직을 해야 합니다. 복직 후는 복직 날짜가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제출이 없는 경우는 퇴소 처리 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서 이용 개시일에서 2 개월 후까지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8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 1 희망 보육시설이 소재한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 연락해 주세요. 구청이 권유한 시설의 이용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후의 다음 신청부터 2021년 3 월 16 일까지 우선 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제출 서류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는 경우 “교육·보육급부 인정”, “이용 내정”, “입소 승락”, “이용자 부담액(보육료)”의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10 이용 우선 기준 및 이용자 부담액 결정에 있어서 동일 세대자를 포함한 센다이시 시민세 과세 상황 및 주민 기본 대장을 열람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아동 보호자 및 세대원의 타 시정촌에있어서의 시민 세 과세 상황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 11 결정된 이용자 부담액(보육료)과 신청서 내용 (가정 상황 신고서 및 보육을 필요로 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은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예정) 보육 시설에 대해 통지합니다.
- 12 구직 활동이나 출산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인정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인정 기간 만료일로 보육 시설 이용은 종료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육 시설이용은 종료됩니다. 계속해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약 1 개월 전까지 보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 13 보육 시설을 이용 중에 주소, 취업 상황, 가정 상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육·보육급부 인정 신청서 겸 가정상황 변경 신고」와 필요 서류를 보육 시설 (또는 구청 가정건강과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14 결정한 이용자부담액(보육료)은 기한 내에 납입합니다.
- 15 이용자 부담액 (보육료)은 원칙적으로 계좌 이체에 의해 납입하시기 바랍니다.